

국민 안전이 기준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발간등록번호
11-1471229-100001-14

등록번호
안내서-1183-04

국민 안전이 기준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나트륨 · 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2024. 12.



나트륨 · 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점검표

명칭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여부	이미 등록된 지침서·안내서 중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침서·안내서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 예 ☒ 아니오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일회성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 예 ☒ 아니오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서 안내서 구분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 예(→지침서) ☒ 아니오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 예(→안내서) ☐ 아니오
기타 확인사항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2024년 12월 23일

담당
확인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주무관 이 송 학
과 장 기 용 기

[illegible]

CONTENTS



I. 개요

1. 목적	7
2.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이란?	7
3. 용어의 정의	8

II. 저감 표시방법

1. 저감 표시기준 적용대상	9
2. 저감 표시기준 단계별 표시방법	10
3. 주요 Q&A	22

III. 참고자료

1.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 전문	29
2. 영양성분 표시오류에 따른 행정처분	34

I 개요



목 적

본 지침서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4-63호, 2024.10.17.) 내용을 소개하고, 제품에 나트륨 저감 표시기준을 표시하는 방법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이란?

① “저감 표시기준”의 추진배경은?

-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는 나트륨·당류 섭취를 줄이고 자극적인 맛과 불규칙적인 식사습관을 피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덜 짠, 덜 단 제품 섭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나트륨 등 저감 표시 관련 기준이 엄격하여 제품에 저감 표시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나트륨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조사된 라면, 가정간편식을 시작으로 나트륨 함량을 줄인 다양한 제품의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이 고시는 나트륨·당류 저감 정책이라는 특정한 정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제조업체와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고시로 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② “저감 표시기준”의 이번 개정 배경은?

-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인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③ “저감 표시기준”이란 무엇입니까?

-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와 비교하여 나트륨·당류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로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5조(영양표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영양표시)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용어의 정의

▶ 영양성분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 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영양성분표시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저감 표시

나트륨·당류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로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와 비교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자사유사제품

동일 식품제조회사에서 생산 또는 동일 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유형 및 세부분류, 제조방법, 성상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

▶ 비교단위

제품 간 나트륨·당류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당류를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

▶ 세부분류

나트륨·당류 평균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를 말한다.

1. 저감 표시기준 적용대상

분류	적용대상 품목
나트륨	유당면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국·탕, 찌개·전골, 냉동밥, 도시락(정찬형)
	만두
	빵류 중 피자
당류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

2. 저감 표시기준 단계별 표시방법

1단계 제품이 저감 표시기준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현재 나트륨 저감표시의 적용대상 품목은 유탕면,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즉석섭취 식품(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국·탕, 찌개·전골, 냉동밥, 도시락(정찬형)), 만두, 빵류(피자)이고 당류 저감표시의 적용대상 품목은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 빵류(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입니다.

* 상기 품목에 해당되지 않은 품목은 현행「식품등의 표시기준」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기준을 적용합니다.

2단계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것인지 결정한다.

영양성분 표시 외에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저감 표시를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 저감 표시는 해당 영양성분 및 9가지 의무 영양성분 표시를 모두 표시한 이후에 저감 표시 문구를 결정합니다.

- 3단계
- ①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저감(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한함) 또는
 - ②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저감을 확인하여 저감 표시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저감 표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사유사제품’의 범위를 확인하고, 자사유사제품과 비교하여 나트륨·당류 함량을 25% 이상 줄이고 그 함량이 식약처가 제시한 나트륨·당류 평균값 보다 낮은 경우 저감 표시가 가능합니다.

식약처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에 게시된 세부분류별 평균값 확인 후 동일 식품유형 대비 10%이상 저감하였을 경우 저감 표시 가능합니다.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알림·교육→식품안전뉴스→정책소식→정책공유창

4단계 저감표시 기준을 적용하여 문구를 결정한다.

평균값 적용시에는 식품 유형별 단위기준(1회 섭취참고량당, 100g당 또는 100ml당)에 따른 저감률을 확인하여, 강조표시 부근에 비교대상과 저감률이 포함된 문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 제품명의 활자크기 보다 작게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등에 저감 표시

1 자사유사제품

- ① ‘자사유사제품’은 같은 제조회사가 생산하거나 같은 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판매한 식품유형 및 세부분류, 제조방법, 성상이 동일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단, 수출용 제품 및 실적이 없는 제품은 제외합니다.

- 기존 판매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여 새로 개발한 경우 비교 대상 품목의 설정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시) 식품안전나라 식품영양성분 DB에 비교대상 기준이 되는 개발 이전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간주

[자사유사제품에 해당하는 사례]



A사의 A라면 매운 맛, A라면 치즈 맛, A라면 로제 맛 제품은 자사유사제품에 해당됨



B사의 참치마요네즈 삼각김밥과 불고기 삼각김밥 제품은 자사유사제품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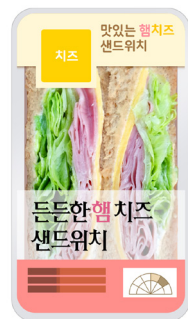
II 저감표시 방법



C사의 김밥과 제조방법, 성상이 동일한 김밥 제품은 **자사유사제품**에 해당됨



D사의 고기만두와 김치만두 제품은 **자사유사제품**에 해당됨



E사의 햄치즈샌드위치와 햄에그샌드위치는 **자사유사제품**에 해당됨



F사의 5찬형과 6찬형 도시락(즉석섭취식품)은 **자사 유사제품**에 해당됨



G사의 바나나맛 우유와 딸기우유 제품은 **자사유사제품**에 해당됨



H사의 바닐라라떼와 크림바닐라라떼는 **자사유사제품**에 해당됨

[자사유사제품 해당하지 않는 사례]



봉지형과 용기형을 비교한 경우

- 제품 비교 시 세부분류(봉지형, 용기형, 비국물형, 국물형)별 유형이 다르면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



비국물형과 국물형을 비교한 경우



동일한 세부분류로 비교하지 않은 경우

- OO텔리의 탕과 찌개는 세부분류가 다르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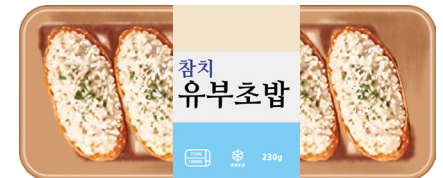
동일한 제품형태로 비교하지 않은 경우

- OO텔리의 건조형태의 미역국과 국물형 미역국은 제품형태가 다르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



저감표시 적용 가능한 영양성분 대상이 상이한 경우

- A사의 김밥 및 주먹밥 제품은 자사유사제품 대비 당류를 줄여도 당류의 저감표시 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적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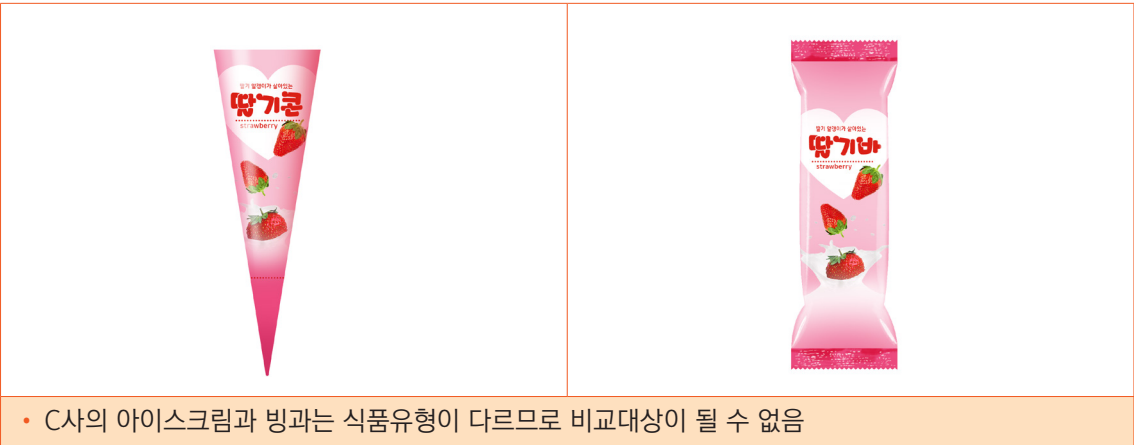


B사의 주먹밥과 유부초밥 제품은 자사유사제품에 해당되지 않음

- 제조공정, 성상이 다르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



- 타르트는 당류의 저감표시 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B사의 크림치즈머핀과 크림치즈타르트는 자사유사 제품에 해당되지 않음



- ② 유통전문판매업도 자사유사제품과 비교하여 저감표시 가능합니다.
- 기존 식품제조업자 외에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자사가 유통하는 제품 대비 저감 표시 · 광고 할 수 있습니다.
- * 유통전문판매업(OEM) : 식품을 스스로 제조 ·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 · 가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 · 가공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 판매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5. 나. 3))



2 세부분류별 평균값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식품유형별 나트륨 · 당류 함량값이며 식약처 누리집 (www.mfds.go.kr),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식약처 누리집: 알림→공지/공고→공지

** '식품안전나라: 알림 · 교육→식품안전 뉴스→정책 소식→정책공유창

분류	식품유형	세부분류	평균값	비고
나트륨 (mg)	유당면	국물형(용기형)	1,524	1회 섭취참고량당 (1식)
		국물형(봉지형)	1,695	
		비국물형(용기형)	1,031	
		비국물형(봉지형)	1,240	
	건면 (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국물형	1,787	100g당
		비국물형	1,060	
	즉석섭취식품	삼각김밥	384	100g당
		김밥	420	
		주먹밥	440	
		도시락(정찬형)	308	
		햄버거	538	
		샌드위치	452	
	즉석조리식품	국 · 탕(국물형)	246	
		국 · 탕(비국물형)	353	
		찌개 · 전골(국물형)	378	
		찌개 · 전골(비국물형)	289	
		냉동밥	368	
		도시락(정찬형)	237	
	만두	-	397	
	빵류	피자	430	
당류 (g)	가공유	-	9.1	100g당 또는 100mL당
	발효유	-	8.4	
	농후발효유	-	8.8	
	빵류	카스텔라	29.2	100g당
		케이크	21.4	
		머핀	20.3	
		파이	19.3	
	아이스크림	-	15.8	100g당 또는 100mL당
	아이스밀크	-	16.4	
	샤베트	-	16.2	
	빙과	-	16.1	
	음료류	액상커피 (유가공품 향유 제품에 한함)	8.2	
		유산균음료	6.9	

II 저감표시 방법

- 평균값 산출 기준 연월
 - 유tang면: '21년 12월
 - 삼각김밥, 국·탕, 찌개·전골: '22년 6월
 -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 '23년 10월
 - 건면,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액상커피, 유산균음료: '24년 10월
- 유tang면은 1회 섭취참고량당(1식), 그 외 품목은 100g당 기준으로 산출함
- 100g당 평균값을 산출한 품목은, 표시 대상 제품의 함량을 100g당 기준으로 환산 후 평균값 대비 10% 낮은 경우에만 저감 표시 가능함
- 평균값 적용 시 계산방법(10% 저감 시)
 - 나트륨 적용대상은 나트륨 평균값에서 10% 낮춘값(소수점 첫째자리)과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소수점 첫째자리)과 비교
 - 당류 적용대상은 당류 평균값에서 10% 낮춘값(소수점 둘째자리)과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소수점 둘째자리)과 비교

3 세부표시방법

[저감표시 잘된 사례] 제품의 비교대상과 저감률을 포함하고,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된 값으로 표시

		
예시문구		
자사유사제품 대비 나트륨 25% 줄인 제품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 함량을 10% 줄인 제품	자사 도시락 보다 나트륨 25% 줄인 제품
		
예시문구		
본 제품은 올해 출시된 삼각김밥 대비 나트륨 함량을 25% 낮춘 제품	자사 미역국 보다 나트륨 함량 25% 줄인 제품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 함량 10% 낮춘 피자
		
예시문구		
자사의 머핀 제품 대비 당류 30% 덜 사용한 제품	자사유사제품 대비 당류를 25% 저감 제품	식약처 평균값 대비 당류 10% 라이트 제품

[저감표시 잘못된 사례]

① '저감' 문구만 표시한 경우



- 제품의 비교대상과 저감률을 포함하지 않고, 저감한 사실만 표시함
→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등 **강조표시 부근에 비교대상과 저감률이 포함된 문구**를 표시하세요.

② 식품유형의 세부분류별 나트륨 · 당류 평균값을 잘못 적용한 경우



- 식품유형, 제품의 형태 등을 먼저 확인하고 세부분류에 해당하는 나트륨 · 당류 평균값을 적용후 저감문구를 표시하세요.
→ 찌개제품에 찌개·전골(국물형)의 평균값을 적용하지 않고 국·탕(국물형)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액상커피는 유가공품 함유 제품만 저감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는 당류 저감 표시가 불가능합니다.



- 건면은 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하기 때문에 조미 식품 없는 건면은 나트륨 저감 표시가 불가능합니다.

③ '허용오차 범위' 까지 고려하여 저감 표시한 경우

- 자사유사제품 또는 평균값 대비 나트륨 · 당류 함량 표시하는 경우,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으로 저감률을 표시하세요.
- 제품을 실제 저감하여 표시할 때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하여 표시하는 경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음
* 영양성분 표시오류에 따른 행정처분 : 제품 영양성분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면,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참고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기준을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식·음료 제조업체는 실제 측정한 자료 또는 과학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자료 등 영양성분 산출근거를 토대로 제시 및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주요 Q&A

1 일반사항

Q1 기존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영양강조 표시기준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제품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제품과 저감 표시 대상 및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평균값의 차이가 최소 25% 이상 시 영양강조표시가 가능하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에서는 ①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저감 또는 ②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저감 기준을 충족하면 ‘덜, 감소, 줄인’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제품에 표시 가능합니다.

* 같은 식품제조회사에서 생산 또는 같은 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판매한 동일 식품유형 및 세부분류, 제조방법, 성상이 동일한 제품을 말함(수출용, 생산실적 없을 경우 제외)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저감표시 조건 비교]

구분	「식품 등의 표시기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저감 표시 조건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 동일 유형제품 표준값 대비 함량 차이가 최소 25% 이상이며 영양성분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에 따른 ‘저’의 기준값*보다 커야함 * (저당) 100g당 5g미만 또는 100mL당 2.5g 미만 / (저나트륨) 100g당 120mg 미만	①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저감 ②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저감(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한함)

Q2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개정의 주요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햄버거·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를 추가하고, 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대상에 빵류 중 카스텔라·케이크·머핀·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를 추가하였습니다.

Q3 나트륨 저감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가 추가된 이유는?

1인 가구 등의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간편식에 대한 영양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 중 업계의 요구와 제품 출시 가능성, 나트륨 저감 시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였고 건면의 경우 유탕면과 유사한 형태로 형평성을 위해 추가함

* 1인 가구의 가정 내 간편조리음식의나트륨 섭취량(mg) : (' 18년) 257 → (' 20년) 374 → (' 22년) 340 (출처: 식약처)

** 가정간편식 생산실적: (' 20년) 3조 3,454억원 → (' 21년) 3조 9,097억원 → (' 22년) 4조 4,616억원 (출처: 식약처)

Q4 당류 저감 표시기준 적용 대상에 빵류,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가 추가된 이유는?

여자 어린이의 당류 섭취 급원*, 저감효과 및 당류 이외에 다른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6~11세 당류 급원식품 순위(빵류)아이스크림)

** 유가공품 함유 제품은 당류 이외에 단백질, 칼슘 등의 영양성분을 함유하여 적용대상 품목으로 우선 고려

Q5 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기준도 나트륨과 동일하게 평균값 대비 10%,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줄였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당류 저감 표시기준도 나트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당류 저감 표시기준에서의 당류 함량은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동일하게 ‘총당류’ 함량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다른 표시기준과의 조화, 총당과 첨가당을 분석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 첨가당으로 기준 적용 시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Q6 새롭게 개발된 저감 제품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에 따른 저감 표시가 가능한가요?

신규 개발된 저감제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정하는 나트륨·당류 함량 평균값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나면 저감 표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자사유사제품 대비 나트륨·당류 함량을 비교하여 저감표시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제조한 제품과 비교 후 저감표시가 가능합니다.

Q7 라면사리 제품이나 라면과 유사한 과자류도 저감 표시기준을 적용하는지요?

라면(유탕면)만 적용대상이며, 별도 스프가 없는 포장 제품(예, 라면사리류 제품)이나 조리 없이 개봉 후 스프를 첨가하여 섞어서 섭취하는 제품(예, 뿌셔뿌셔, 쫄병스택 등의 과자류)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정의

Q8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사유사제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자사유사제품이란 같은 제조회사에서 생산하거나 같은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판매한 동일한 식품유형 및 세부분류, 제조방법, 성상이 동일한 제품이며, 일반적으로 같은 회사의 자사 제품을 의미합니다.

Q9 냉동밥(즉석조리식품)의 구체적인 적용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열하여 섭취하는 볶음밥, 비빔밥 형태의 제품을 말하며, 일반적인 쌀밥, 잡곡밥과 덮밥, 국밥, 도시락 제품 그리고 식단조절용 제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맛을 더하기 위해 양념(간장, 고추장)이 추가로 동봉·포함되었거나 용기를 컵에 담은 컵밥 형태는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 식단조절과 관련된 문구를 표시한 제품(체중 조절용, 저열량, 다이어트 등)

Q10 이번에 추가되는 도시락(정찬형)의 구체적인 적용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밥, 반찬(3찬~7찬 등)으로 구성된 형태의 제품을 말하며, 덮밥, 비빔밥, 볶음밥, 국밥형 제품, 밥이 없는 형태의 제품(돈가스 스파게티 등) 그리고 급식으로 제공되는 도시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11 수입식품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값 마련 시 국내 생산·유통되는 제품에 한하여 평균값을 산출함에 따라 수입식품에는 적용은 할 수 없고 자사유사제품 비교도 국내 같은 제조회사 및 같은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만 비교 가능하므로 수입식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표시방법

Q12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의 구체적인 표시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표시방법을 준용하며,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하면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제품에 표시 가능합니다.

*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①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②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저감 기준을 충족 시 저감표시가 가능하며, 식약처장이 공지한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예시) “본 00 가공유는 가공유 평균값 대비 당류를 15% 줄인 덜 단 제품입니다”

Q13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적용대상 외 다른 식품의 저감 표시와 관련 표시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식품 등의 영양표시를 포함한 모든 표시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과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적용합니다. 공통사항은 식품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Q14 저감 표시 문구의 글자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3(식품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10 포인트 이상의 글자크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영양성분 함량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아. 영양성분등 2)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시면 됩니다.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문장이 아닌 문구로도 저감표시가 가능합니다.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가능한 한 저감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동일한 면의 표시를 권고합니다.

4 평균값

Q15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 평균값은 어떻게 되나요?

1. 유당면
 - ① 국물형(용기형) : 1,524mg ② 국물형(봉지형) : 1,695mg
 - ③ 비국물형(용기형) : 1,031mg ④ 비국물형(봉지형) : 1,240mg
 2.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 ① 국물형 : 1,787mg ② 비국물형 : 1,060mg
 3.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 384mg
 4. 김밥(즉석섭취식품) : 420mg
 5. 주먹밥(즉석섭취식품) : 440mg
 6. 도시락(정찬형)
 - ① 즉석섭취식품 : 308mg ② 즉석조리식품 : 237mg
 7. 햄버거(즉석섭취식품) : 538mg
 8. 샌드위치(즉석섭취식품) : 452mg
 9. 국·탕, 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
 - ① 국·탕(국물형) : 246mg ② 국·탕(비국물형) : 353mg
 - ③ 찌개·전골(국물형) : 378mg ④ 찌개·전골(비국물형) : 289mg
 10. 냉동밥(즉석조리식품) : 368mg
 11. 만두 : 397mg
 12. 피자(빵류) : 430mg
- * 유당면은 1회 섭취참고량당, 그 외 품목은 100g 당 기준으로 산출

A15

Q16 식품의 세부분류별 당류 평균값은 어떻게 되나요?

1. 가공유 : 9.1g
 2. 발효유 : 8.4g
 3. 농후발효유 : 8.8g
 4. 빵류
 - ① 카스텔라 : 29.2g ② 케이크 : 21.4g ③ 머핀 : 20.3g ④ 파이 : 19.3g
 5. 아이스크림 : 15.8g
 6. 아이스밀크 : 16.4g
 7. 샤베트 : 16.2g
 8. 빙과 : 16.1g
 9.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 8.2g
 10. 유산균음료 : 6.9g
- * 용량으로 표시된 제품도 적용 가능(ml=g)

A16

Q17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평균값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평균값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설정합니다.

1단계(자료수집) 고시 적용 품목별 품목제조보고 검토, 제품별 나트륨·당류(영양성분) 함량 확인

2단계(1차 검증)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나트륨·당류 함량 검토·확인

3단계(2차 검증)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나트륨·당류 함량 검토·확인

4단계(최종결정) 검증내용을 토대로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평균값 설정

* 제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평균값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을 토대로 산출(수입제품은 제외)

**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이 1일 영양성분기준치(나트륨:2,000mg, 당류: 100g)를 넘지 않도록 권고함

A17

Q18 당류 제품의 평균값 적용시 영양성분 표시를 부피단위 기준으로 표기한 제품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당류 적용대상인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의 경우, 100g 또는 100ml 기준으로 평균값 적용이 가능합니다.

A18

Q19 물을 추가하여 국물 형태로 섭취하는 국(즉석조리제품) 제품의 평균값 적용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물이 농축된 형태로서 물을 추가하여 섭취하는 즉석조리식품의 국 제품이라면 세부분류는 ‘비국물형’에 해당하며, 나트륨 평균값은 물을 추가한 100g당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총 내용량은 200ml(제품에 표시된 영양정보의 나트륨 함량 1,400mg)이고 조리방법에 ‘물 500ml에 제품을 넣어 끓여 드세요’ 라고 적혀있는 경우, 100g당 나트륨 함량은 $1,400\text{mg} / (200+500) \times 100 = 200\text{mg}$ 으로 계산

A19

II 저감표시 방법

5 세부분류별 평균값 재평가 주기

Q20 저감 표시 기준의 평균값 재평가 주기 등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주기) 재평가 주기는 나트륨·당류 평균값의 변화 필요성 등을 근거로 3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다만, 국민영양 개선, 대상 식품의 시장변화 및 함량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하여 저감 기준값 등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방법) 재평가 시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의 나트륨·당류 실태조사와 식품영양성분DB 등에 따른 저감 기준값의 변화 필요성 등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생산실적보고를 통해 확인가능한 제품의 종류 및 나트륨·당류 함량 변화를 검토합니다.

6 식품유형별 세부분류

Q21 [별표]에 제시된 식품의 세부분류에서 즉석조리식품의 국물형과 비국물형은 어떠한 제품을 뜻하나요?

국물형은 완제품 형태로 물을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데워서 섭취하는 형태이며, 비국물형은 고체형 및 분말형 스프, 액상스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물을 추가하여 섭취하는 형태입니다.

III 참고자료



참고 1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 - 63호

2024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나트륨·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식품 유형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저감 표시”란 나트륨·당류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로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와 비교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사유사제품”이란 같은 제조회사에서 생산하거나 같은 유통전문판매업에서 판매한 식품 유형 및 세부분류, 제조 방법, 성상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수출 전용 및 품목 제조 신고 이후 생산 실적이 없는 제품은 제외한다.
3. “비교단위”란 제품 간 나트륨·당류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당류를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
4. “세부분류”란 나트륨·당류 평균값을 동일하게 적용할「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 따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식품 유형과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

1. 나트륨 저감 표시
 - 가. 유탕면
 - 나.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 다.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

라. 즉석조리식품 중 국·탕, 찌개·전골, 냉동밥 또는 도시락(정찬형)

마. 만두

바. 빵류 중 피자

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

라.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또는 파이

마. 아이스크림

바. 아이스밀크

사. 샤베트

아. 빙과

자.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차. 유산균음료

제4조(표시기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다.

1. 세부분류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10% 이상 저감한 경우. 이 경우 세부 분류별 평균값은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2. 세부분류별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당 25% 이상 저감한 경우(다만,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③ 비교 단위는 1회제공량당으로 한다. 다만,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식품의 비교단위는 단위 내용량으로 한다.

제5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재검토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021-104호, 2021. 12.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 아.3) 나)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3)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양성분과 식품유형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2022-42호, 2022. 06. 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3-65호, 2023. 10. 0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4-63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 아.3) 나)에 (4)항 중 “특정 영양성분”을 “나트륨·당류 등 특정 영양성분”으로 한다.

별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식품의 세부분류(제3조 관련)

분류	식품유형	세부분류 (포장형태 등)	해당 제품형태(예시)
나트륨	유탕면	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라면
		비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비빔면, 볶음면 등
	건면 (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국물형*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건면
		비국물형**	비빔냉면, 쫄면 등
	즉석섭취식품	삼각김밥	김으로 싸 주먹밥 등
		김밥	밥 등의 내용물을 김으로 말아서 만들거나 유사 형태로 만든 음식
		주먹밥	밥을 둥근 형태로 만든 음식으로 주먹밥, 유부초밥 등
		도시락 (정찬형)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 제품 * 덮밥, 비빔밥, 국밥형, 조리면, 밥이 없는 형태 등 제외
		햄버거	둥근 빵에 육류, 채소 등을 끼워 만든 제품(치즈버거 등) * 밥버거 제외
		샌드위치	얇게 썬 빵 조각 사이에 소스 등을 바르고 육류, 달걀, 치즈, 채소 등을 끼워 만든 제품 * 랩 샐러드, 토르티야 등 제외
	즉석조리식품	국, 탕 (국물형, 비국물형)	소고기미역국, 무국, 육개장, 갈비탕 등
		찌개, 전골 (국물형, 비국물형)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두전골, 곰창전골 등
		냉동밥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데워서 섭취할 수 있는 볶음밥, 비빔밥 등(덮밥류, 국밥류, 도시락류 제외)
		도시락 (정찬형)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 제품 * 덮밥, 비빔밥, 국밥형, 조리면, 밥이 없는 형태 등 제외
	만두	-	식육, 채소류 등의 혼합물을 만두피 등으로 성형한 것(고기손만두, 채소 만두 등)
	빵류	피자	반죽 위에 육류, 치즈, 채소, 소스 등을 얹어 구운 제품

분류	식품유형	세부분류 (포장형태 등)	해당 제품형태(예시)
당류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바나나맛 우유, 딸기 우유 등)
	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의 것
	농후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호상 또는 액상의 것
	빵류	카스텔라	거품을 낸 달걀에 밀가루, 설탕 등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스펀지 형태의 속 모양을 가진 제품
		케이크	밀가루, 달걀, 버터, 우유, 설탕 등을 넣어 구운 제품(롤케이크, 파운드케이크 등)
		머핀	밀가루, 달걀, 우유, 설탕, 베이킹파우더 등을 넣어 컵 모양으로 구운 제품
		파이	밀가루 반죽 사이에 육류, 과일 등을 채워 구운 제품
	아이스크림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6% 이상, 유고형분 16% 이상의 것
	아이스밀크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2% 이상, 유고형분 7% 이상의 것
	샤베트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무지유고형분 2% 이상의 것
	빙과	-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커피	액상커피 (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커피 고형분이 0.5% 이상인 제품
	유산균음료	-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

* (국물형) 조리 시, 국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분말스프 등을 첨가하여 끓이거나 끓여서 섭취하는 제품 또는 제품에 있는 국물 또는 분말스프 등을 희석한 국물을 익힌 면과 함께 섭취하는 제품

** (비국물형) 조리 시, 국물을 버리고 끓이거나 익힌 면에 분말스프 등을 첨가하여 섭취하는 제품

*** (빵류 세부분류) 제품명을 기본으로 분류하되, 형태, 원재료, 성상, 제조 방법 등 제품별 특징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세부 분류 적용

참고2 영양성분 표시오류에 따른 행정처분

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	-	-
1)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40만원	60만원
3)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	-	-	-
가)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5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나)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20만원	40만원	60만원

나.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	-	-
1)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